

[2026]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안내

○ 건강보험 가입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되고, '건강보험증'과 '가입 안내문'이 발송 됨
- 외국인 등록 신청서 작성 시 '대한민국 내 주소' 정확한 기재 요망
 - ※ 대학교 기숙사, 원룸의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거소지 변경 신고도 동일
- (자격상실) 체류기간이 종료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하면 자격 상실 단, 체류자격이 있는 유학생 출국상실자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 (가입제외)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 가능

○ 보험료 산정

- (D-2, D-4 유학생) 월 79,320원 ... '25.11.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50% 경감
 - ※ 연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3,5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감 적용
→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고지

-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소지로 종이고지서 우편 발송
 - ※ 우편 고지서는 매월 13~15일 경 도달

- (전자고지)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매월 10일경**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이메일 고지 신청 시 **매월 200원 감액** ... 고객센터 전화 또는 붙임 1서식 작성 신청

○ **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예시) '26. 4월 보험료: '26. 3. 25.까지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은행(CD,ATM), 공단(신용·체크카드), 편의점(현금, 체크카드)에서 납부
 - ※ 고지서 없이도 전화 상담을 통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음
 - ※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수수료가 추가 됨
- (자동이체) 계좌 또는 카드로 가능, **매월 납부마감일(전월 25일) 출금**되며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 ... 고객센터 전화 또는 붙임 1서식 작성 신청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보험급여제한)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다음월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예시) '26. 4월 보험료: '26. 3. 2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6. 5. 1.부터 급여제한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연체금 부과)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최대 5%의 연체금 부과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며, 체납보험료 완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되어 보험급여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이용 안내**

○ **건강보험 혜택**

- (내국인과 동일) 가입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

○ **병원·의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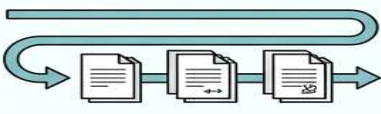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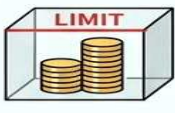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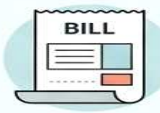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요양기관(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이용
 - ※ 요양기관 이용 시 '외국인등록증' 지참

- 외래 진료비의 약 40~70%, 입원 진료비의 80%,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진료비의 95%,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의 90%를 공단이 부담

○ **건강검진**

- 2026년도 건강검진 대상: 만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 ※ 2025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추가 신청 후 검진 가능
- (검진종류) 일반건강검진,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 100% 공단 부담

민간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 (공적)	민간보험 (사적)
<p>청구 절차</p> <p>(즉시 혜택) 진료 후 사후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p> 	<p>서류 준비 및 승인 대기</p> 
<p>보장 한도</p> <p>(보장 횟수·금액) 횟수·금액 제한 없음</p>  <p>*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함</p> 	<p>연간 총 보장 한도 존재</p> 
<p>본인 부담금</p> <p>(본인부담 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여 연간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환급</p>  	<p>실비 공제금액 부담</p> 
<p>임신·출산 지원</p> <p>(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p>   <p>전국 각지사 및 금융기관에서 카드 신청 접수 가능</p> 	<p>특약 가입 시 보장 (일반적 실비 제외)</p> 

문의 Inquire / 상담 Consultation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Dial 6 for information on foreign language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 Service in foreign languages

(English, Chinese, Vietnamese and Uzbek) available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Service Hours : 9:00 am ~ 6:00 pm on weekdays

붙임1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전자고지 [√]신규 []변경 []해지(철회)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청보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체		
	고지방법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_____)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_____)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_____)			
수신자	성명	사용자와 관계	연락처	

지역 가입자 등	세대주	건강보험증번호(납부자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신청보험	[]전체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증번호 변경 시 연계 동의
	고지방법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_____)	
		[]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_____)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_____)		
수신자	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락처

자동이체 [√]신규 []변경 []해지

사업장 가입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희망일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사업자등록번호)
※ 합산고지 사업장은 합산자동이체로 신청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입자 등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희망일	[√]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가입자와의 관계

공통	[√] 환급계좌 신청	※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작성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와 동일한 계좌로 신청됩니다.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 변경 또는 해지(철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붙임2

대학교별 공단 관할지사

연번	학교명	공단 관할 지사명	우편번호	주소	팩스번호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달성고령지사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2, 1층	053-620-8172
2	대구공업대학교	대구달서지사	4264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6(두류동, 송림타워 8층)	053-620-8034
3	계명문화대학교				
4	계명대학교				
5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남부지사	4248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24, 5층	053-620-8152
6	수성대학교	대구수성지사	415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3 (범어동), 4층	053-620-8093
7	영진전문대학교	대구북부지사	41561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199 (침산동), 1층	053-620-8074
8	대구과학대학교				
9	대구보건대학교				
10	경북과학대학교	칠곡성주지사	3988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41, 1층	054-440-0523
11	김천대학교	김천지사	39614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94 (남산동 190-1), 1층	054-440-0542
12	구미대학교	구미지사	39375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81(공단동)	054-440-0503
13	금오공과대학교				
14	경운대학교				
15	성운대학교	영천지사	38850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1길 45 (문외동)	054-230-3362
16	대신대학교	경산청도지사	38677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17 (사정동)	053-620-8133
17	대구한의대학교				
18	대경대학교				
19	영남대학교				
20	대구대학교				
21	영남신학대학교				
22	대구카톨릭대학교				
23	호산대학교				
24	경일대학교				
25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26	신경주대학교				
27	위덕대학교				
28	포항공과대학교	포항남부지사	378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대도동)	054-230-3325
29	선린대학교	포항북부지사	377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8번길 4(덕산동113-1)	054-230-3302
30	한동대학교				
31	문경대학교	문경예천지사	36947	경북 문경시 중앙3길 11 (점촌동)	054-440-0562
32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청송영양지사	36720	경상북도 안동시 중평2길 33(용상동)	054-820-9702
33	카톨릭상지대학교				
34	안동과학대학교				
35	동양대학교	영주봉화지사	36100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56 (영주동)	054-820-9722